

의안번호	2216309
의 퇴 인	안철수 의원
회 답 일	2025. 10. 30.
추계번호	25A404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 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6항 ¹⁾ 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봄	재량규정
2	안 제17조의9 신설 (이공계인력 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6조 ²⁾ 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봄	재량규정
3	안 제17조의10 신설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 비용 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2항 ³⁾ 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봄	재량규정
4	안 제17조의11 신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⁴⁾ 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봄	재량규정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⑥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 결제(현금결제 및 상생결제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6조(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 석사학위·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이하 “비산배출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3조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7조의9 신설 (이공계인력 지원에 관한 특례)	
3	안 제17조의10 신설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 비용 지원에 관한 특례)	
4	안 제17조의11 신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특례)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현행 재정 또는 세제 지원이 확대되어 재정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 개정안에는 재정지출의 증가와 재정수입의 감소 요인이 모두 있으며, 이를 조문 및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재정지출의 증가 요인으로는 ①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등 채용에 따른 재정지원, ②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비용 지원, ③온실가스 감축설비 등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있음
 - 재정수입의 감소 요인으로는 ①현금성 결제(상생결제) 세제지원, ②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등 채용에 따른 세제지원, ③온실가스 감축설비 등 설치에 따른 세제지원이 있음

[표]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및 재정수입 감소 요인

구분	근거규정	지원 내용
재정지출 증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 중소기업이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채용 시 재정지원 -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2항	-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설 정기점검 비용 지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제2항	-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설비 등 설치 시 보조금 우선 지원
재정수입 감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	-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 개선 및 현금성 결제(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포함)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6조제1항	- 중소기업이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채용 시 세금 감면 등 지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제2항	-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설비 등 설치 시 우선적으로 세제지원

□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재정지출의 증가액과 재정수입의 감소액을 합산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 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수와 기업당 재정지원액 또는 세금 감면액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재정지출 증가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등 채용에 따른 재정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추계액을 산출할 수 없음
- 비산배출시설 설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점검 비용 지원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실시 중인 사업이 없으므로 중견기업에 이를 적용하는 경우 예산 증가 규모를 추정할 수 없음

- **온실가스 감축설비 등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경우 현재 실시 중인 재정사업*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하였던 평균 보조금 액수 등을 산출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단가 추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개정안⁵⁾에 따른 중견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어 지원 대상 기업의 수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자료 1]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등 지원 사업 현황

**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 **재정수입 감소 요인별로는 다음과 같음**

- **현금성 결제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의 경우 현재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후 비용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0.15~0.5%를 세액공제

* [참고자료 2] 상생결제 세액공제 현황(2017~2023년)

-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등 채용에 따른 세제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추계액을 산출할 수 없음

- **온실가스 감축설비 등 설치에 따른 세제지원**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실시 중인 세액 감면 제도 등이 없으므로 중견기업에 이를 적용하는 데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추정할 수 없음

□ 이에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하는 데 따른 재정부담(재정지출 증가액 및 재정수입 감소액의 합산액)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5) 안 제17조의11(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1]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등 지원 사업 현황

□ 세부사업명, 회계 및 사업코드

- 세부사업명 :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환경부) -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 온실가스 감축 통합지원
-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 회계/사업코드 : 기후대응기금/6131-601

□ 사업 내용(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사항 등)

- 지원대상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만톤 이상인 사업장 보유업체
- 지원기준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공공기관 50%, 대기업 30%
- 지원사항 : 탄소무배출설비, 폐열회수이용설비·탄소포집설비, 전력사용설비 등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교체 비용 지원(2015년~)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금액

- 2025년도 예산 : 117,900백만원
- 2026년도 예산안 : 120,000백만원

□ 최근 3년간(2022~2024년) 지원 대상 기업 수

(단위: 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중소	중견	대	중소	중견	대	중소	중견	대
기업수	27	70	-	27	98	4	18	88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자료 2] 상생결제 세액공제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중소 기업	신고금액	220	287	350	373	527	841	1,441	4,039
	신고법인 수	29	39	55	72	93	84	87	459
중견 기업	신고금액	—	2	365	298	610	1,180	2,328	4,783
	신고법인 수	—	1	10	18	18	30	32	109
소 계	신고금액	220	289	715	671	1,137	2,021	3,769	8,822
	신고법인 수	29	40	65	90	111	114	119	568

주: 각 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함(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는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